

요약

-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임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고, 그때부터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 상 임원들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해야 함
 -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법·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하고,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함
 -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감독하며,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위반이 장기화·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① 임직원의 법령 또는 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②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이를 감경·면제할 수 있음
-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상 임원 및 대표이사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열거함으로써 의무이행에 관한 일응의 지침을 제공함
 - 다만 수범자가 관리의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제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등으로 제재·감면 사유인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및 제재·면책 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 중인바, 보험업계는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될 예정임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보험회사는 1년 이내, 그 미만은 2년 이내 책무구조도¹⁾를 마련해 처음 제출해야 하고, 그때부터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됨²⁾
 - 본건 법률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무구조도 상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데 있음
 -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만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법령상 요구되는 수준의 외형을 갖추는데 집중해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 기존 마련에 더하여 내부통제기준 운영·준수 등 일련의 과정 전체를 규율대상에 포섭하고 주요 경영진이 책임영역 내에서 단계별로 관리조치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임³⁾
-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 6월 11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바 곧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임⁴⁾
 - 보험업권에서도 개정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새로 도입되는 규제 준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위반 시 신분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규제적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 본고에서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함

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및 제재·감면 규정

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금융회사의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⁵⁾는 내부통제 전반적 집행 및 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1)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임원 및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로 (i)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 및 (ii)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이하 '책무체계도')로 구성됨(법 제30조의3, 감독규정 제14조의3 제2항)

2)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및 제6조 제3호, 개정 법률에 따른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호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p. 3

4) 개정 법률에 따른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024년 2월 입법예고된 데 이어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4월 규정변경예고됨. 이후 5월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된 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바 이하에서는 5월 재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서술함

있게 해야 함(법§30의2, 영§25의2③ 및 법§30의4, 영§25의4③)

-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는지, 임직원이 법령이나 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는지 점검해, 위반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함
 -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위반 임직원등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요구해야 함
- 한편 대표이사는 큰 틀에서 내부통제 정책 및 방침 등을 집행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적정한지, 각 임원이 내부 통제 관리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며,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위반이 장기화·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알게된 위반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함

-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에 따라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취약분야’(법§30의4①5.)는 이해상충이 있거나, 사업부문·취급상품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특정 사항에 대해 여러 임원이 보고하는 경우 등임(영§25의4①)
 - 또한 ‘위반 장기화, 반복, 조직화 또는 확대 방지’(법§30의4①6.)를 위해, 위반 발생 시 연루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 동일·유사한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위반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영§25의4②)
- 임원은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위 사항들 및 임원 보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법§30의2②, §30의4②)

나. 위반 시 제재 및 책임 감면

- 책무구조도상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신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법§35의2①)⁶⁾
 - 다만, ① 임직원의 법령 또는 기준 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및 ②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의무를 수행했는지 고려해 감경·면제할 수 있음(법§35의2②)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임원이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자기책임이므로⁷⁾ 임직원 제재조치에 관한 일반 조항 중 감독자에 대한 조치(법§35⑤)는 적용하지 않음

5)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

6) 직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요구가 가능함(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제재가 가능함(법 제35조의2 제3항)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11.30.),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p.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3), p. 7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

-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 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범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본건 개정 법률 검토

-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상 임원 및 대표이사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열거함으로써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이행에 관한 일응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는 신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바,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의무를 충족한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음
 - 제재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과도하게 방어적이고 위험회피적 태도로 이어져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취지와 달리 실효적 내부통제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 관련 규정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만, (i)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를 고려하여 또는 (ii)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재 감면 규정을 둔 것은 개정 법률의 목적이 임원의 제재에 있지 않고 임원이 스스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있기 때문임
 - 위 (i)은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 내부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ii)는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⁸⁾
- 이처럼 제재 감면 근거를 두는 것은 개정 법률의 취지 상 타당하지만, 제재 및 감면 근거 조항의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하여 입법 단계부터 여러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⁹⁾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6. 22),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p. 2

9) 국회 정무위원회(20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p. 27~29

- 정무위원회는 기존의 제재 감경 기준으로도 제재를 감면할 수 있음에도¹⁰⁾ 개정 법률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관해 별도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또한 제35조의2는 감면 근거를 규정한 것임에도 제재 처분 시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을 규정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정무위원회 심사 당시는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개정 법률의 문구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현재 문구 역시 재량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됨
- 한편 금융업계¹¹⁾에서는 제재 감면사유인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이끄는 유인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러한 보완 필요성은 현재도 유효하며,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 보완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됨

○ 첫째로, 의무 위반 및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 판단방법 내지 근거를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감독자 책임 감면의 요건으로 '상당한 주의'를 제시하는 입법례¹²⁾가 다수 존재하는바, 반드시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바 '상당한 주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수범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행동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함
 - 수범자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등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영국, 호주 등 선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와 유사하게 대상 임원에게 자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¹³⁾하는데, 제재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의 판단기준 내지 고려사항에 대해 지침을 제공함
 - 영국에서는, 판단 시 고려사항을 (i) 위반행위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취했어야 할 조치와 (ii) 실제로 취한 조치로 나누어 아래 표와 같이 열거하고, (i)과 (ii)의 조치를 비교·평가하여 '합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되, (i)의

10) 금융업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며, 제재 처분 시 위법행위 동기 및 정도, 손실액 규모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고,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음

11)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12) 예컨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4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13) 영국의 경우 대상 임원은 자신의 책임영역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시정하기 위해 취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Financial Services Markets Act §66A(5), §66B(5)). 호주는 대상 임원에게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위·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법령의 중대한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FARA§21)

‘취했어야 할 조치’는 해당 시점에 존재했던 상황만을 기반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제시함¹⁴⁾

〈표 1〉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 판단 시 고려사항

취했어야 할 조치	실제로 취한 조치
(1) 회사의 크기, 규모 및 복잡성	(1) 취임 시 업무 또는 업무영역에 대한 초기 검토를 포함하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
(2) 고위관리자가 실제로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재직 기간, (신규 취임 시) 인수인계 약정 등 고려)	(2) 적절한 정책 및 절차의 시행, 감시 및 검토
(3) 고위관리자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당시 보유하고나 보유했어야 하는 전문지식 및 역량	(3) 규제 체계 관련 요건 및 기준에 대한 인식
(4) 고위관리자가 취할 수 있었던 대안적 조치의 존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시기의 적시성을 고려할 때 고위관리자가 취할 수 있었던 조치	(4) 고위관리자의 책임 영역에 대한 조사 또는 검토
(5) 해당 고위관리자의 실제 책임 및 이러한 책임과 회사 내 다른 고위관리자의 책임 사이의 관계	(5) 위반 계속 시, 해당 위반에 대해 취한 모든 대응 조치
(6) 고위관리자가 기능의 위임 시 위임이 적절하게 배치, 관리 및 감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모든 위임 사항이 적절하게 관리·검토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일상적인 운영의 구조화 및 통제
(7)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 및 당시 고위관리자가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과 환경(적절한 위험평가에 의해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는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7) 적절한 내부관리정보 획득 및 해당정보의 비판적 조사·모니터링
	(8) 문제 제기, 검토 및 관련 직원, 위원회, 이사회와의 사후점검
	(9) 내외부의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확인의 구득
	(10) 회사 및/또는 관련 영역에 적절한 자원이 있고 위험 및 통제 기능을 포함하여 적절히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11) 주요 위험을 포함한 관련 외부 진행사항에 대한 인식

- 호주의 경우, ‘합리적 조치’는 (i) 적절한 거버넌스, 통제 및 위험관리, (ii) 부적절한 책임 위임에 대한 안전장치 존재, (iii)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문제를 식별 및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마련, (iv)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법률에 규정¹⁵⁾하고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험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권고¹⁶⁾함

APRA의 권고

- 의무이행 관련 기준을 마련할 뿐 아니라 특정 업무와 관련해 책임부담자가 취한 합리적인 조치의 예들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합리적인 조치’를 모니터링하여 취해진 조치가 대상 회사의 기대를 충족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책임영역에 관한 책임 분장 시 직속 부하직원 개개인에 맞추어 배분하고 이를 성과관리체계에 직접적으로 연동시킴
- 합리적 조치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기록의 강도는 개별 임원의 집행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과 증빙 자료의 심도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영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i) 관리의무 이행 및 ‘상당한 주의’ 요건 충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판단기준, 판단방법 내지 근거 등을 제시하고, (ii)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의무이행 및 제재에 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금융업권에서도 회사 및 업계 차원에서 모범사례를 모아 공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14) FCA Handbook DEPP 6.2.9-E, PRA Supervisory Statement SS35/15 - 2.111, 2.112

15) FARAS22

16) Australi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2020), Information paper: implementation of the Banking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 (BEAR), p. 16-18

- 둘째로,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위반' 자체가 없었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관리의무 위반 성립을 전제로(법§35조2①)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면(동조②2.)하는 개정 법률의 규정 형식 자체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사료됨
 - 영국과 호주의 개인책임성제도하에서는 대상 임원이 책임영역에서 일어난 다른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임원의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봄
 - 그에 대비하여 볼 때 현재의 규정은 마치 임원의 책임영역에서 다른 임직원의 법령·기준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책무구조도 상 임원이 일단 책임을 부담하되(결과책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히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조차 있다고 보임
 -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개정방안 예시

- 책무구조도 상 임원이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관리의무 위반이 없는 것이므로) 제재조치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함
- 문제되는 특정 '위반행위 발생'에 관해 관리의무 미흡으로 관리의무 위반이 성립되는 경우 해당 임원이 '평소에 책임영역에 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결어

- 금융감독당국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및 내부통제 책임 관련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 중임¹⁷⁾
 - 동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은 금융권의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 후 공개될 예정임
 -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 및 제재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향후 제재 규정의 보완 등 제도의 지속적 개선·발전을 위해 감독당국,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1),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